



## 데이트 사이트의 고객정보 및 프로그램 영업비밀 부정 취득과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①

38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성18년(와) 제5172호
판결 일자	2007. 5. 10.	판결 결과	원고 청구 일부인용
원고 (피항소인)	1. 이플래닝 주식회사, 2. 머티어리얼 유한 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회사 외 3명(성명 미기재)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영업 비밀	데이트 사이트 회원의 「나이」, 「원하는 이성의 타입」, 「거주 지역」, 「이용한 시간」, 「이용 요금」 등의 고객정보 및 데이터 사이트 운용 프로그램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 02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남녀와 성적 소수자가 헌팅과 만남을 할 수 있는 데이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 이플래닝의 전 직원들은 원고 이플래닝 및 같은 데이트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 머티어리얼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인 고객정보를, 데이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 회사와 그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피고회사는 상기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트 사이트의 영업 활동을 하였다.

원고들의 전 직원들은 원고 이플래닝의 영업비밀인 데이트 사이트용 휴대전화 사이트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취득하고, 피고 회사와 그 직원들은 그 사정을 알고도 동 프로그램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회사에게 원고 이플래닝에게는 937만 엔 상당을, 원고 머티어리얼에게는 372만 엔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 03 주요 쟁점

원 고 (피항소인)



피 고 (항소인)

데이트 사이트를 구축하고자하는 4개의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그 비용은 초기 도입을 위한 수수료로는 한 사이트 당 150만 엔, 개설 후 본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매출의 20% 상당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상당액이 로열티 손해이다. 원고 이플래닝은 피고들 사이트가 개설된 것을 기점으로, 월간 평균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므로, 그 매출액의 80% 상당은 적어도 원고 이플래닝이 입은 손해이다. 변호사 비용, 조사비용도 손해이다.

(나타나지 않음)

### 04 판결 요지

피고는 적시의 호출을 받으면서도 본건 구두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와 기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며, 청구 원인 사실을 분명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다.

원고 이플래닝이 주장하는 조사비용에는 피고의 행위가 없어도 지출할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공제됨이 타당하고, 변호사 비용의 적정범위는 법원이 결정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 이플래닝에 대해 917만 엔 상당을 인용한다.

원고 머티어리얼이 주장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상기 피고들에 의한 본건 프로그램의 부정 취득 행위 등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한다.

### 05 Key Point

피고가 다투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재판부는 친절하게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해서 원고 머티어리얼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런 친절은 항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조건 원고 청구 전부 인용해 주는 재판부가 더 많을 것이다.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아무리 할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인하고 다투다고 답변하는 것이 옳으며,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조금이라도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